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 |
|---------|---|
| 관련 항목: | BLC, COB-RA, ECC-RA, IOA-RA, JFA, JFA-RA, JGA, JGA-RA, JGA-RC, JNA-RB |
| 책임 사무실: |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학업 관련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

정학/제적(Suspension or Expulsion)

I. 목적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교직원이 서로를 존중하여 학습과 교습에 집중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안전한 긍정적 학습환경을 함께 조성해나가는 곳입니다. 학생은 개인과 커뮤니티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관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훈육 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Policy JGA, *Student Discipline* 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훈육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 A. 교습과 학습을 돕는 지속적인 교습 전략과 적절한 훈육절차가 포함됩니다.
- B. 긍정적인 태도와 가능한 경우, 학생의 잘못된 태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C. 회복을 위한 훈육을 반영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나 실수를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D.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 E. 학생이 학교에서 또는 학교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준비되도록 합니다.

II. 정의

- A. The **행정부서의 최고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는 교육감으로 대행으로 정학 또는 퇴학에 관련된 결정을 담당합니다.
- B. **상담(Confer)**은 모든 의미에서의 토론과 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관점과 고려사항에 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전화, 전자메일, 직접 만나는 회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 C. **퇴학/제적(expulsion)** 학생이 45 일 이상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COO 는 정학 전에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 돌아오는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2. COO 는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3. 학교 시스템은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 **회복을 위한 훈육(Restorative Practices)**이란,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평화조성을 도와 학교 환경에서 해가 되는 것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 또는 문화조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1. 훈련된 교직원이 실시합니다.
 2.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화를 통해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것을 고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3.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소속감, 안전감, 사회적 책임감 구축을 돕습니다.
- E. **정학(Suspension)**
1. **교내 정학(Suspension in-school)** 은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 후견인에게 서면 통보와 함께 학사일정 기간 중, 훈육을 이유로 학교 건물

내에서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으로부터 최대한 10 일까지 학생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내 격리는 학생이 계속 다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한 정학의 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a) 적절한 일반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도가 나가는 교습을 받을 경우.
- b) 학생이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5.01* 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에 따라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 c) 일반 반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교습을 받고 있을 경우.
- d) 학생이 학생의 현재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급우와 함께 참여하고 있을 경우.

2. 정학(*Suspension*) (*단기/short-term, 학교 외/out-of-school*)은 학생이 3 일(학사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훈육 사유를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정학(*Suspension*) (*장기, 학교 외*)은 학생이 4 일에서 10 일 미만에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훈육 사유를 학교장을 통해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정학(*Suspension*) (*연장/extended, 학교 외/out-of-school*)은 학생이 11-45 일 이내에 학생의 일상 학과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a) COO 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1) 학생이 정학기간 전에 학교에 돌아오게 될 경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학생이 교육제공과정에 만성적으로 심각하게 방해가 되었을 경우, 교습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체 방어를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고 적절한 행동과 훈육 중재를 다 사용해 본 경우.

- b) COO 는 학생이 격리되는 기간을 실행이 가능한 제일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 c) 학교 시스템은 수업시간에서 격리되는 학생에게 비슷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상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성공적일 수 있도록 행동개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I. 학생 훈육을 위한 지침

- A. 학생은 질서 잡히고 안전하며 일관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훈육이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MCPS 교직원은 명확하고 성장도에 적절하며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적절하고 일관된 훈육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B. 장애가 있는 학생의 IEP 또는 Section 504 Plan 개발은 연방정부법에 따라 특정부분이 보호받고 있으며, IEP 또는 Section 504 Plan 이 있는 학생의 훈육은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C.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은 위반과 다음 요소를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학생의 나이. (프리킨더가든-3 학년의 정학과 퇴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Section V 를 봅시다)
 - 2. 전에 있던 심각한 훈육 위반 (전의 잘못된 행동의 성격, 이전의 잘못된 행동의 횟수, 행동에 따라 적용된 훈육 조치의 진행)
 - 3. 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언어적 요인
 - 4. 사건의 정황
 - 5. 처벌의 경감 사유/요인 또는 악화되는 상황

D. 교육구 전체 훈육 기준

1. 교습과 학습을 돕고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며 회복을 위해 실행되어지는 방법과 결과를 숙고하여 개선해 나아가는 교습 방법과 훈육 조치는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2. 훈육 중재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하는 훈육 방법은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에 있습니다.
3. 정학과 제적은 마지막 선택사항으로 사용됩니다.
4. 장애가 있는 학생의 IEP 또는 Section 504 Plan 개발을 위해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에 명시된 법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결과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 권한

1. 학교장/대리인은 학교 내 정학, 단기 정학, 장기 정학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또한 연장 정학 또는 퇴학을 COO 에 이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COO 는 학생의 연장 정학이나 제적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3. MCPS 는 훈육을 이유로 다른 학교 또는 대체 학교 교습 프로그램에 인도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훈육을 이유로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있을 경우, MCPS Regulation JGA-RB, *Suspension and Expulsion* 과 MCPS Regulation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IV. 학교용 행정절차

- A. 학교장/대리인은 모든 기간의 정학 또는 퇴학을 받게 되는 규율 위반에 관한 반응으로 학교장/대리인은-

1. 징계를 내리기 전 또는 가능한 즉시 학생이 개인 또는 사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경우, 가능한 한 즉시 학생을 학교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교육절차를 훼방하는 위험이 계속 있을 경우 학생을 만납니다.
 - a) 학생의 학생에 대한 혐의에 관해 알리고 증거에 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b) 학생에게 학생 입장에서의 사건에 관해 알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징계를 받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결과를 제공합니다.
3. 학생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결정이 날 경우, 학생이 교사의 학급반에 돌아오기 전에 인계한 교사와 상의합니다.

B. 결정에 따라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

1. 되도록이면 학생이 학교 소유지를 떠나기 전에 모든 노력을 다해 징계를 받게 되는 학생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립니다. 고려에는 나이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합니다. 학생이 18 세 이상으로 부모님/후견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어린 학생들을 경우와 같이 학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서면으로의 알림을 나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알릴 때,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a) 정학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와 정학 기간
 - b)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검토하고 정학 결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학부모/후견인과의 회의 요청
 - c) 학부모/후견인의 이의제기에 관한 권리를 알리는 성명
 - (1) 단기 정학과 장기 정학은 학교장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다음 단계의 이의제기는 Division of Pupil Personnel and Attendance Services (DPPAS)의 디렉터에게의 이의제기(appeal)입니다.

(2) 연장 정학 또는 제적 추천은 COO 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d) 학생이 학부모/후견인과 동반하거나 정학 상태에 적힌 승인이 있지 않은 한, 학생은 학교에 돌아올 수 없음을 알리는 성명

2. MCPS Form 560-6, *Worksheet for Suspension or Health-Related Exclusion* 을 작성하고 OASIS 의 워크시트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560-6 양식 사본을 학생의 누적파일에 보관합니다.

3. 정학을 받은 학생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4. 학생을 인계한 교사와 학생이 교사의 반에 돌아가기 전에 상의를 합니다.

5.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책무를 책정하고 정학과 퇴학한 반에서의 학업을 따르기 위해 각 학교는 다음과 같이 교육 서비스를 최소한 시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a) 학교 외에서의 정학이나 퇴학을 받았지만 대체 교습 프로그램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각 교사에게 수업한 내용과 과제물을 받고 교사에게 매주 평가와 수정을 받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b) 학교장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 밖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과의 중간역할을 할 교사를 지명하고 수업내용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매주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c) 단기 정학의 경우, 학교는:

(1) 단기 정학을 받은 모든 학생은 정학기간 동안 빠진 수업의 과제를 완성하여 정학 기간으로 인한 추가 감점 없이 제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2) 단기 정학을 받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Section IV.B.5.a 요구하는 조건이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학교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3) 정학으로 학생이 받게되는 과제물 미제출, 과제를 완수 못하는 것, 재시험 등의 다른 모든 면들은 각 학교가 정한 모든 다른 허가된 결석 규정과 같이 적용됩니다.
6. 적절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후견인과 함께 규율 위반을 방지할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V. 프리킨더가든-2학년 학생의 훈육 절차

A. 이 항목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 사항으로 프리 킨더가든-2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만약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환경을 방해할 경우, 학생 학년에서 공격적이어서 정학을 고려해야 하는 행동을 할 경우, 프리 킨더가든-2학년 학생의 행동에 관해 중재 교육 또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중재 교육과 도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긍정적 행동 교육과 도움(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 b) 태도 교육 계획(behavior intervention plan)
 - c) 학생 서포트 팀으로의 추천(referral to a student support team)
 - d) IEP 또는 Section 504 계획팀으로의 추천(referral to an IEP or Section 504 Plan team) 및
 - e) 적절한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으로의 추천(referral for appropriate community-based services)
2. 학교는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에 명시되어 있는 회복적 실행을 포함하는 적절한 중재 교육 방법으로 학생의 태도를 학교 환경 내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 B. 프리킨더가든-2학년 학생의 태도가 *MCPS Student Code of Conduct*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경우 정학을 받게 됩니다.
1. 여러 가지 중재 교육이나 도움으로도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게 미치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없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교 심리학자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 만약 학교장/대리인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승인을 위해 즉시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의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후견인에게도 연락해야 합니다.
 3. 정학이 승인될 경우, 정학 기간은 사건 당 5일(학교 수업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 C. 프리킨더가든인 학생의 제적 권고는 연방정부 법에서 지정한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예: 총 또는 화기 관련)

VI. 정학/퇴학의 제검토 절차

- A. 학부모/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또한 학교장의 재검토 후, DPPAS 디렉터는 단기 또는 장기 정학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B. 학교장의 단기 또는 장기 정학 제공 결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DPPAS 디렉터는-
1. 학교장, DPPAS 직원, 학부모/후견인, 또는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 훈육행동 추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합니다.
 2. DPPAS 디렉터의 선택으로 전화로 연락하거나 학교장과 또는 학부모/후견인과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3. 사유를 포함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학부모/후견인에게 COO 로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C. 만약 학교장이 연장된 정학 또는 퇴학을 권고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즉시 이 권고를 **Office of the COO**에 알립니다.

1. 학교장의 연장 정학 또는 퇴학 권고를 받게 되면, Office of the COO 의 직원은 DPPAS 직원과 학교와 함께 학부모/후견인에게 권고된 조치에 관해서와 지정된 COO 청문 담당자(hearing officer)와 학생, 학생 부모/후견인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알립니다.
 2. 회의 후, COO 는 연장 정학이나 퇴학이 정당하게 제공된다는 결정에 따라 학생 또는 학생 부모/후견인에게 사본을 보내고 교육위원회에 결정된 날짜부터 10 달력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음을 함께 알립니다. 교육위원회의 이의제기 절차는 Board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D. 학생의 정학 또는 학교에서의 제적은 학생, 학부모/후견인이 정학에의 이의제기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COO 가 정학 전에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학이나 퇴학을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정학 또는 퇴학의 기간과 상태가 맞는 날에 학교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 E. 이 규정 Section V 에 명시된 절차는 첫 정학부터 학교일 10 일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의 부재로 인하여 또는 조사의 복잡성 때문에 지연되어 절차 완료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COO 가 정학 전에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다치게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학교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 F. 학생이 10 일 후에도 학교로 돌아오는 승인이 안 나는 경우, COO 는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24 시간 이내에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와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Maryland 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 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VII. 손해배상 절차

학교장/대리인은 MCPS Regulation ECC-RA, *Loss of or Damage to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Property*,와 MCPS Regulation JNA-RB, *Collection of Student Financial Obligations* 에 따라 학생의 주와 지역 법과 규정 위반에 따라 생긴 재산 손실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생이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하고 학교 사유지/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생이 Maryland Department of Juvenile Services 에 인계되지 않는 한,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에게 2,500 불까지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VIII. 정학과 제적 기록의 관리와 삭제

- A. 만약 학교장, DPPAS 디렉터 또는 COO 디렉터가 정학이나 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MCPS Form 560-6, *Worksheet for Suspension or Health-Related Exclusion* 워크시트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훈육 절차에 따라 학생의 기록에서 즉시 삭제되며 이와 같은 관련된 개인 정보는 누구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 B. 학생의 전자기록에서 정학이나 제적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학 양식 MCPS Form 560-6, *Worksheet for Suspension or Health-Related Exclusion* 을 학교장의 기록을 삭제한다는 글과 서명을 chief technology officer 에게 보내야 합니다. 학교는 제거절차 승인을 받은 후, 원본을 파기됩니다.
- C. 확정된 정학 또는 퇴학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서류는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에 따라 학교장이 보관합니다.
- D. MCPS 는 필요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정학과 퇴학절차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s, §7-305, §7-305.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8.01.11; 13A.05.01

규정 변경사: 1979년 2월 21일 이전 규정 No 515-3 ; 1983년 규정사 갱신; 1986년 12월 갱신; 1989년 7월 26일 갱신; 1994년 6월 17일 갱신; 1997년 7월 30일 갱신; 1998년 7월 22일; 2006년 2월 28일 갱신; 2014년 7월 21일 갱신; 2017년 9월 27일 갱신; 2018년 9월 3일 갱신.